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3-2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(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)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편법 제15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, 25조 제1항 15호의 소포 우편물에 부가하는 우편역무인 휴일배달소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를 중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3년 2월 7일

우정사업본부장

소포우편물 휴일배달서비스 접수 중지에 대한 공고

1. 중지 사유

-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집배 및 발착 직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일요일 배달 휴무 시행

2. 중지 대상 : 소포우편물 일요일 휴일배달서비스

※ 주중 공휴일인 경우 종전과 같이 소포우편물 휴일배달서비스는 실시

3. 접수중지 개시일 : 2013. 2. 25